

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권영희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07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5월 25일
발 의 자 : 권영희, 이준형, 김제리,
최정순, 이정인, 이호대,
채인묵, 이태성, 유 용,
이광호 의원(10명)

1. 제안이유

- 코로나19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세계도시 간 투자유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투자유치 방법을 다각화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촉진기구 및 투자유치단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, 코로나19 이후의 투자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
- 아울러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개정에 따라 도입된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이 서울시에 본격적으로 조성됨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서비스업 투자유치에 강점이 있는 서울의 투자 협상력을 강화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외국인투자 촉진기구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(안 제6조)
- 나. 투자유치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(안 제6조의2)
- 다.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기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(안 제9조의2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과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시장은 투자유치 기반 강화를 위해 투자유치전문기관에 외국인투자 촉진기구를 설치하고 해외 마케팅 및 외국투자가 투자 신고 지원 등 외국인투자 유치에 필요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-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치사무의 일부를 투자유치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6조의2(투자유치단) ① 시장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잠재 외국인투자를 발굴하는 투자유치단을 운영할 수 있다.
- ② 투자유치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9조의2(외국인투자지역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) 시장은 외국인투자지역 활성화를 위해 법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기업에 대

해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외국인투자 유치사무의 위탁)</p> <p>①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설></u></p> <p>② 시장은 <u>제1항</u>에 따라 유치사무의 일부를 투자유치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6조(외국인투자 유치사무의 위탁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시장은 투자유치 기반 강화를 위해 투자유치전문기관에 외국인투자 촉진기구를 설치하고 해외 마케팅 및 외국투자가 투자 신고 지원 등 외국인투자 유치에 필요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시장은 <u>제1항 및 제2항</u>에 따라 유치사무의 일부를 투자유치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.</p>
<u><신설></u>	<p>제6조의2(투자유치단) ① <u>시장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잠재 외국인투자를 발굴하는 투자유치단을 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투자유치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u></p>
<u><신설></u>	<p>제9조의2(외국인투자지역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) <u>시장은 외국인투자지역 활성화를 위해 법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기업에 대해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

- 국내 전문가 자문회의 : 자문수당 40,000천원+업무추진경비 6,000천원=46,000천원
 - 자문수당 : 수당단가 200천원×10명×연 4회×5년=40,000천원
 - ※ 자문수당 단가 : 「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」 (바. 자문 및 심사수당)에 따라 2시간 200천원 적용
 - 업무추진경비 : 경비단가 30천원×10명×연 4회×5년=6,000천원
 - ※ 업무추진경비 단가 :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 17조(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·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) [별표1]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(제17조 관련)에 따라 3만원 수준으로 적용
- 해외 전문가 초청비용 : 71,910천원
 - 초청비용 : 왕복항공료 및 숙박비 등 4,794천원×연 3명×5년=71,910천원
 - ※ 왕복항공료 및 숙박비 등 단가는 2019년 서울산업진흥원 창업전문가(미국) 초청에 소요된 비용을 참고

(단위 : 원)

구분	산출내역	소요금액
계		4,794,100
왕복항공료	일반석(샌프란시스코-인천, 이코노미) 1인	3,660,500
숙박비	USD223×2박×1인×1,300원	579,800
일비	USD35×3일×1인×1,300원	136,500
식비	USD107×3일×1인×1,300원	417,300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 담당관 남승우
 조사분석팀장 여차민
 예산분석관 박주용
 ☎ 02-2180-7943
 e-mail : pjooyong@seoul.go.kr